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먼저 提案經緯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第36回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 議決되었기에 이를 地方教育自治에關한法律 第14條 第2項에 의거 서울特別市議會 本會議에 提案한 것이며,</p> <p>둘째로 改正理由를 말씀드리면 金利自律化에 따른 財産賣却代金 年拂 納付時 利率 適用基準의 變更과 公有財産審議會의 委員 中 一部를 조정하려는 것이며,</p> <p>셋째로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延滯利率을 포함한 利率 適用基準을 金融通貨委員會에서 決定 告示한 利率에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 教育金庫로 指定된 金融機關의 家計貸出 金利로 利率을 變更하고 公有財産審議會의 委員 中 社會教育課長을 企劃豫算擔當官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根據는 地方財政法 第78條 및 同法施行令 第100條입니다.</p> <p>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1. 제안경위</p> <p>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p> <p>금리자유화에 따라 재산 매각대금 연불 납부시 이자율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p>가.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 적용기준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이자율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금고 이자율로 변경함.</p> <p>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중 사회교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함.</p> <p>4. 근거</p> <p>지방재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p> <p>5. 검토의견</p> <p>가.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교육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건축과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li> <li>• 동 조례 제21조 제2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불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li> <li>• 동 조례 제26조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ul> <p>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개정(안)의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위원중 사회교육과장을 제외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권한과 담당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회교육</li> </ul>
---	--

<p>과장을 교체하여 업무상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상 합리적인 개정으로 보여지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조 제2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분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를 붙여 5년 이내 납부하도록 한 것은, 1993.10.28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여신금리를 자유여수신금리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금융기관 여수신 자율화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li> <li>제26조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 일반연체이자율도 한국은행의 자유여수신금리 변경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은 역시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됨.</li> </ul>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에”로 한다.          제26조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시중은행”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구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이상 檢計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教育監이 提出한 서울특별시教育監 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p>	<p>5.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30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改正理由를 말씀드리면 南部教育廳 管内 永登浦地域의  계속적인 學生數 減少와 同地域 住民들의 高校新設 要請에 의하여 永登浦區 楊坪洞 所在 한강여자중학교를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로 改編하기 위하여 한강여자중학</p>